

면부책 회신

접수번호	20190720-00394-001	피보험자	남이숙	차량번호	서울98바4797
사고일시	2019-07-20 08:40	운전자	남이숙	관계	피보험자본인
제목	차차 고소작업차량 건물 외벽작업중 고압선 단전으로 면부책 질의				
질의유형	대물 / 차량 담보 약관-(대물, 차량) 기타				
검토자	최종내				
검토 내용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질의요지</p> <p>- <u>차차(고소작업차)가 전선을 접촉하여 단락되어 인근에 있는 상점 등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면부책</u>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결정 : 검토의견 참조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판단근거</p> <p>-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6조(보상하는 손해) 제2호</p> <p>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·사용·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해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.</p> <p>- 민법 제763조(준용규정)</p> <p>제393조(손해배상의 범위), 제394조(손해배상의 방법), 제396조(과실상계), 제399조(손해배상자의 대위)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.</p> <p>- 민법 제393조(손해배상의 범위)</p> <p>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.</p> <p>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.</p>				
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검토의견</p> <p>- <u>손해의 분류와 관련하여, 불법행위의 직접적인 대상에 대한 손해를 '직접적 손해', 불법행위의 직접 대상 이외의 손해를 '간접적 손해'라고 하는데,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차차의 사고로 전선이 절단된 손해는 직접적 손해에 해당할 것임.</u></p> <p>- 그리고 <u>간접 손해 중 전선의 단선에 따른 과부하 등의 서유로 인근 상가 등에서 가동 중이던 전기기기 및 전자제품의 파손 등과 같이 기존의 이익이 멀실 또는 감소됨에 따른 손해는 '적극적 손해'에 해당되고,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전기공급 중단으로 인해 냉장고에 보관된 식자재 등이 훼손되거나 상품가치가 하락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 및 상가의 영업손실 등과 같이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'소극적 손해'에 해당할 것임.</u></p> <p>- 그런데 이와 같이 <u>전선 절단 등의 직접적 손해를 포함하여, 간접적 손해 중 전기 과부하 내지 역전류 등의 현상이 발생하여 상가에 비치(설치)된 전기기기 및 전자제품, 전기배선 등에서 발생한 손해와 같은 기존의 이익이 멀실 또는 감소됨에 따른 손해(적극적인 손해)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은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이 상당히므로(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4다5472 판결 참조), 이를 손해에 대해서는 담수가 보상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.</u></p>				

면부책 회신

- 한편, 이 사건 사고직후 약 1시간 ~ 1시간 30분 만에 절단된 전선이 복구되어 전력이 공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실제 상가의 식자재 등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고, 위와 같은 단시간의 정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상가의 식자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자차운전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
- 나아가 만일 단시간의 정전사고에도 상가의 냉장고에 보관중인 식자재에 훨씬 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, 통상 전력의 공급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중단될 수 있으므로, 전력을 공급받아 상가 등을 운영하는 업주로서는 불시에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비상 발전기 가동 등 상시 필요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가능한 한 전기공급이 중단된 채로 냉동장치가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 요구되는 것임
- 또한, 다수의 법원판례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피해상가의 영업손해의 경우에도 자차운전자가 예견가능한 손해로 볼 수 없을 것임
- 이와 같이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,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상가의 식자재가 훼손되거나 상품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해 및 영업손실 등은 자차운전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소극적인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해 보임
- 따라서, 본 건 직접적 손해 및 간접적 손해 가운데 적극적인 손해(전기기기 및 전자제품 등과 같은 기존의 이익이 멸실 또는 감소됨에 따른 손해)에 대해서는 부책하되, 자차운전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위 소극적손해에 대해서는 면책함이 타당해 보임

* 이상의 의견은 질의하신 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, 다른 사정이 있으 면 검토결과가 달리질 수 있고, 사내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, 검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 유출을 금함.

<<특별손해 관련 판례>>

- 대법원 1995. 12. 12. 선고 95다11344 판결 [손해배상(자)] :
<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>
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, 가해 차량이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을 절단케 함으로써 그 전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비닐하우스 내 전기온풍기를 가동하던 피해자가 전력 공급의 중단으로 전기온풍기의 작동이 중지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사고 당시에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그 책임을 부담한다.
-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1. 11. 1. 선고 2000가단4608 판결 : (양어장사건)
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(대법원 1995. 12. 12. 선고 95다11344 판결 참조),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절단된 전선 자체에 관한 손해가 아니라

면부책 회신

그 전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 받던 양어장에서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여 어류들이 폐사하거나 성장이 저연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간접적 손해라 할 것인데, 피고가 위 사고 당시 절단된 전선이 뛰고 결명의 위 양어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이었고 위 양어장에 청천사를 대비한 자가발전기 등의 시설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전이 되면 양어 중인 어류들이 집단 폐사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-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4다5472 판결 [손해배상(자)]

<공장지대에 위치한 전신주를 충격하여 인근 공장에 전력공급이 중단됨으로써 피해자가 영업상 소극적 손해 및 기계 고장 등 적극적 손해를 입은 경우, 가해자의 배상책임의 범위>

가해자가 공장지대에 위치한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이 절단된 경우, 그 전선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받아 공장을 가동하던 피해자가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공장의 가동이 상당한 기간 중지되어 영업상의 손실을 입게 될지는 불확실하며 또 이러한 손실은 가해행위와 너무 먼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, 전주 충격사고 당시 가해자가 이와 같은 소극적인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, 이 경우 그 전신주를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인근 피해자의 공장에서 예고 없는 불시의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인하여 갑자기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바람에 당시 공장 내 가동 중이던 기계에 고장이 발생한다든지, 작업 중인 자료가 뭉쓰게 되는 것과 같은 등의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은 가해자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이 상당하다. -

- 대법원 1995. 12. 12. 선고 95다11344 판결

<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>

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바, 가해 차량이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을 절단케 함으로써 그 전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비닐하우스 내 전기온풍기를 가동하던 피해자가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전기온풍기의 작동이 중지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사고 당시에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그 책임을 부담한다.

-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4다5472 판결 [손해배상(자)]

<공장지대에 위치한 전신주를 충격하여 인근 공장에 전력공급이 중단됨으로써 피해자가 영업상 소극적 손해 및 기계 고장 등 적극적 손해를 입은 경우, 가해자의 배상책임의 범위>

가해자가 공장지대에 위치한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이 절단된 경우, 그 전선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받아 공장을 가동하던 피해자가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공장의 가동이 상당한 기간 중지되어 영업상의 손실을 입게 될지는 불확실하며 또 이러한 손실은 가해행위와 너무 먼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, 전주 충격사고 당시 가해자가 이와 같은 소극적인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, 이 경우 그 전신주를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인근 피해자의 공장에서 예고 없는 불시의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인하여 갑자기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바람에 당시 공장 내 가동 중이던 기계에 고장이 발생한다든지, 작업 중인 자료가 뭉쓰게 되는 것과 같은 등의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은 가해자가 이를 알거나 알

면부책 회신

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.

④ 관련 피해사항

순번	사고번호	피해자/물	추정손해액	추산액	센터명	담당자
001	20190720-00394-대물-002	/건물전	30,000,000	0	서부대물보상부	강유권